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67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경영 의원 외 15명
- 나. 제안일 : 2019년 5월 24일
- 다. 회부일 : 2019년 5월 30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기는 신체 및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기이며 학대, 자살, 학교 폭력,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심리적 외상 (Trauma)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 그 심각성이 매우 높기에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화를 돕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 1조 ~ 제 3조).
-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2019.6.4. ~ 6.1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치료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심리적 외상(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은 충격적 사건(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재해·전쟁, 도파·회피가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및 폭력, 자살, 고문, 테러 등)의 경험 후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것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청소년기의 심리적 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여짐.

※ 트라우마(trauma) 즉, 심리적 외상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손상이 정신적 상처로,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다.(김병석, 2018,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청소년 상담서비스의 원리: 심리적 외상에서 성장으로, 여성가족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인증(depersonalization,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신과 분리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지각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며, 인격상실, 신체감각 상실, 현실감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남), 사회공포증,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조울증, 불면증, 해리장애(정상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성격요소(의식, 기억, 정체감, 지각 등)들이 붕괴되는 장애), 과각성(과민 반응) 충동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등으로 나타남.(① 신차선, 2016, PTSD의 이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②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매뉴얼(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2) 자료 발췌 및 요약 정리)

※ 우리 사회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약 14-43%에 이르고, 충격적 사건에 대한 정상적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불안, 과잉반응,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인다. 보통 2~3일내에 회복되지만 2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한다. 아동 및 청소년은 스트레스 및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인식 및 대처가 미숙하여 심리적 고통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의 경험은 앞서 언급한 사회의 큰 재난재해 뿐만 아니라 아동기 학대 경험, 성추행, 성폭행 경험, 학교폭력, 친구의 죽음, 자살 등 발달상의 여러 외상에 노출되어 있다. 어쩌면 사회적 큰 재난보다 청소년기에서 발생하는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미원, 2018, '청소년 심리적외상'에 대한 체계적 제도마련의 필요성,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¹⁾,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제공²⁾,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교육³⁾ 및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⁴⁾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 1)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⁵⁾은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강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치료 및 이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복지⁶⁾로 자치사무(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⁷⁾)에 해당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의 위기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청소년(12세에서 19세까지 4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전국의 9~24세 청소년은 89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⁸⁾한 결과 정신건강 위험군은 총 77만명(일반학생 73만8백여명, 위기·취약학생군 3만9천여명)이며, 전국 위기취약 청소년 9만여명 중 서울시에 4.4%(3,990여명, 2016년 기준)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⁹⁾되고 있음.

〈 2016년 한국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요약〉

	소계		일반학생군		위기취약청소년군	
	비율	인원수(추정)	비율	인원수(추정)	비율	인원수(추정)
소 계	-	4,190,460		4,099,172		91,288
위 험 군	18.5%	776,970	18.0%	738,069	42.6%	38,901
고위험군	0.6%	26,348	0.5%	21,790	5.0%	4,558
위험군	2.0%	81,767	1.8%	74,365	8.1%	7,402
잠재적위험군	16.0%	668,855	15.7%	641,914	29.5%	26,941
일 반 군	81.5%	3,413,490	82.0%	3,361,103	57.4%	52,387

※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12. (요약 및 도식화)

- 5) 「청소년 기본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7)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8) 2016 한국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년, 2016년 2회 시행
- 9)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12.

※ 위기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서울시 청소년의 10명 중 4명(최근 7년 평균 40.0%)은 평상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10명 중 3명(25.1%)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절망감을 2주 이상 연속하여 경험하고 있으며, 15.8%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5.4%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 -

	7년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38.7%	41.9%	41.4%	37.0%	35.4%	37.4%	37.2%	40.4%
서울	40.0%	41.7%	42.1%	38.8%	36.7%	39.0%	38.7%	42.7%
남자	32.9%	34.9%	34.6%	32.2%	31.3%	31.3%	31.3%	34.5%
여자	47.6%	49.0%	50.3%	45.8%	42.4%	47.3%	46.7%	51.5%

※ 출처 :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2018.12.

〈 서울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7년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27.1%	30.5%	30.9%	26.7%	23.6%	25.5%	25.1%	27.1%
서울	29.6%	31.4%	33.9%	29.9%	26.4%	28.0%	27.7%	29.6%
남자	24.5%	26.8%	28.1%	25.2%	22.1%	22.9%	22.1%	24.2%
여자	35.0%	36.3%	40.2%	34.9%	31.0%	33.4%	33.6%	35.4%

※ 출처 :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2018.12.

〈 서울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 〉

-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7년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3.9%	18.3%	16.6%	13.1%	11.7%	12.1%	12.1%	13.3%
서울	15.8%	19.2%	18.6%	15.7%	13.6%	13.7%	14.4%	15.4%
남자	12.7%	15.5%	14.4%	13.7%	11.4%	10.8%	11.1%	11.8%
여자	19.2%	23.3%	23.2%	17.7%	16.0%	16.8%	17.9%	19.2%

※ 출처 :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2018.12.

〈 서울 청소년의 자살 계획률 〉

-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7년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4.6%	6.3%	5.7%	4.4%	3.8%	4.0%	3.9%	4.4%
서울	5.4%	6.8%	6.7%	5.6%	4.4%	4.8%	4.8%	4.9%
남자	4.8%	5.7%	5.4%	5.6%	4.0%	4.3%	4.4%	3.9%
여자	6.2%	8.0%	8.1%	5.5%	4.8%	5.4%	5.3%	6.0%

※ 출처 :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2018.12.

나. 세부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총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안 제1조)과 용어를 정의(안 제2조)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지원계획(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5조), 예방·치료 사업(안 제6조),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비밀엄수(안 제8조), 시행규칙(안 제9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호와 제4호는 같은 “심리적 외상”을 정의하고 있음.

내용상 안 제2조제2호는 개인의 심리적 외상을, 제4호는 특정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단체 또는 집단의 심리적 외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안 제2조제4호는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칙 및 부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본 정의 규정의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 등)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원만을 책무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함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에 대한 시책 수립은 시장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실태조사 및 검사·치료 등을 지양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통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계획의 수립 또는 컨트롤타워 등의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또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시장이 조례를 근거로 교육감 소관의 학교에서 검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청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조사나 통계청 및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와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상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은둔형·비행형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 및 결과는 개인정보로, 교육청에서는 검사결과를 모두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는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재정지원, 대상발굴, 인력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청소년 심리적 외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부분은 친구의 자살, 성폭행, 성추행, 폭력의 피해 또는 이러한 사건의 목격, 간접적 체험 등으로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전담기구 설치, 현재 CYS-net 활용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1항제1호는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담’은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1항제4호는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필요지식을 충분히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에 맞는 치료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 방식은 기초·심화·전문가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초단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청소년의 효율적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조사도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7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해야 한다)이 아닌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시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한 목적(심리적 외상에 관련)에 한정된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현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

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는 심리적 외상 관련 종사자 및 종사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강행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¹⁰⁾에 따라 의무와 벌칙을 재차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10) 「보건의료기본법」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6. 제71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

다. 종합검토

- 본 제정안은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¹¹⁾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보이는바, “청소년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를 포함한 실태조사(안 제5조), 예방·치료사업(안 제6조), 위원회(안 제7조) 등 몇몇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11) 청소년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규정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충격을 말한다.”를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10.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67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규정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충격을 말한다.”를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충격을 말한다.”를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u>충격을 말한다.</u>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u>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u> 3. (제정안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3. 심리적 외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발굴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